

검 토 보 고

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- 동 조례안은 1998년 12월 16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음.

□ 제안이유

- 문산읍에 설치된 다목적복지회관내의 독서실에 대한 주민 이용율이 적고 현재 시립도서관 3개소에서는 복사료만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독서실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목적복지회관내 독서실 사용료징수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파주시노인·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 시설 사용중 현행 독서실사용료(1일 입실료 1,500원, 1개월 정기 입실료 35,000원)를 무료로 한다.(안 제12조)

□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문산읍에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복지회관내의 독서실사용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으로서 현재 시립도서관 3개소의 이용료가 무료인 점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조치로 사료되며 회관의 운영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.